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 723 호 2009. 10. 26. (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62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63호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64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고시----- 9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7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83호 공시송달공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84호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환부
공고 ----- 3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86호 가좌완충녹지3단계 토지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3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90호 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 3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94호 폐기공인 공고 ----- 3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9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
계획공고 ----- 3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97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4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4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202호 지적공부 시행공고 ----- 4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203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204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4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 - 62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우리 구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재설치를 완료하고 지적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79점)을 고시합니다.

200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가정동 외 5개동
 - 측량연월일 : 2009년 10월 7일 ~ 8일(지적도근점)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 열람안내

- 지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지적도근점

일련번호	명칭	좌 표		
		X	Y	비고
57	지적도근점	-4410.78	-3537.63	계양좌표
58	지적도근점	-4415.68	-3438.13	"
59	지적도근점	-4418.45	-3383.12	"
73	지적도근점	-4775.40	-4084.98	"
85	지적도근점	-5043.94	3907.94	"
86	지적도근점	-5033.15	-4097.99	"
87	지적도근점	-5167.84	-4104.32	"
99	지적도근점	-5286.54	-3579.64	"
102	지적도근점	-5356.72	-3923.11	"
103	지적도근점	-5346.10	-4120.19	"
104	지적도근점	-5441.01	-3927.33	"
106	지적도근점	-5457.61	-3587.17	"
107	지적도근점	-5421.39	-3586.51	"
143	지적도근점	-6383.05	-3309.49	"
154	지적도근점	-6512.19	-3315.42	"
157	지적도근점	-6641.59	-3172.69	"
158	지적도근점	-6641.71	-3326.02	"
176	지적도근점	-7251.16	-3206.55	"
191	지적도근점	-7446.35	-3182.50	"
193	지적도근점	-7736.58	-3233.44	"
194	지적도근점	-7892.17	-3105.42	"
195	지적도근점	-8013.84	-2939.59	"
197	지적도근점	-8169.94	-2770.23	"
200	지적도근점	-8332.98	-2594.55	"
201	지적도근점	-8403.97	-2518.66	"
203	지적도근점	-8221.13	-2348.65	"
204	지적도근점	-8120.73	-2254.71	"
205	지적도근점	-8216.64	-2120.17	"
206	지적도근점	-8421.03	-2312.31	"
207	지적도근점	-8331.27	-2229.25	"
208	지적도근점	-8512.99	-2400.76	"
219	지적도근점	-7628.13	-3350.46	"
224	지적도근점	-6518.55	-3201.01	"
233	지적도근점	-7238.08	-3477.65	"

234	지적도근점	-7243.82	-3355.75	"
250	지적도근점	-5350.49	-4035.42	"
253	지적도근점	-5372.76	-3583.59	"
265	지적도근점	-5037.25	-3999.03	"
266	지적도근점	-5049.22	-3801.65	"
271	지적도근점	-4907.18	-4091.72	"
325	지적도근점	-4405.50	-3643.14	"
1102	지적도근점	455599.25	169182.05	중부좌표
1105	지적도근점	455566.06	169211.52	"
1112	지적도근점	455639.62	169418.50	"
1113	지적도근점	455570.96	169401.18	"
1115	지적도근점	455621.21	169497.26	"
1116	지적도근점	455588.71	169584.48	"
4651	지적도근점	450494.24	171407.47	"
4652	지적도근점	450551.08	171408.25	"
4656	지적도근점	450456.14	171098.18	"
4657	지적도근점	450555.62	171127.67	"
4658	지적도근점	450559.30	171043.19	"
4662	지적도근점	450644.81	171309.42	"
4663	지적도근점	450632.22	171229.77	"
4664	지적도근점	450629.03	171191.97	"
4674	지적도근점	450831.12	171049.72	"
4675	지적도근점	450886.31	171051.40	"
4684	지적도근점	450869.30	171215.83	"
4686	지적도근점	450955.68	171177.39	"
4693	지적도근점	450955.18	171217.77	"
4696	지적도근점	451057.38	171395.46	"
4697	지적도근점	451099.89	171396.09	"
4701	지적도근점	451145.28	171397.68	"
4702	지적도근점	451194.28	171398.98	"
4703	지적도근점	451286.15	171401.89	"
4735	지적도근점	451330.58	171402.06	"
4739	지적도근점	450651.31	171412.54	"
5146	지적도근점	450949.65	169391.80	"
5147	지적도근점	450885.62	169388.28	"
5149	지적도근점	450853.04	169386.65	"
5150	지적도근점	450796.00	169445.06	"
5151	지적도근점	450779.79	169507.35	"
5152	지적도근점	450753.09	169567.05	"

5158	지적도근점	450600.27	169557.92	"
5162	지적도근점	450450.40	169586.81	"
5164	지적도근점	450416.17	169665.15	"
5166	지적도근점	450327.49	169629.41	"
5167	지적도근점	450288.72	169588.89	"
5199	지적도근점	450744.42	169434.4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 - 63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52호(2007.12.1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8-38호(2008.09.04.),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된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자: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0. 2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시장정비사업
 - 나. 명칭 :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72번지
 - 나. 면적 : 3,10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명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72
 - 다. 대표자 : 김민순
 -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0-38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9.10.21.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용도	비고
3,104.7	2,102.15	25,100.24	67.70	492.32	60.7	지하4/ 지상17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1) 판매시설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유	주차장	총 계
6,375.93	1,717.92	1,160.39	4,005.95	13,260.18

2) 공동주택(아파트)

세대수	분양면적	기타공유	주차장	계약면적
68	7,788.14	354.48	3,697.44	11,840.06

주 택 규 모 별 면 적 표 (㎡)							
형 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분양면적	기타공유	주차장	계약면적
28.7평형	2	73.8569	21.0222	94.8791	4.3185	45.0442	144.2418
28.9평형	2	74.5409	21.2169	95.7578	4.3585	45.4614	145.5776
32.7평형	40	84.3669	24.0137	108.3806	4.9330	51.4514	164.7677
38.7평형	24	99.6275	28.3574	127.9849	5.8253	60.7613	194.5715

3) 보류지 : 해당사항 없음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관계도서 : 생략

(서구청 지역경제과(560-4437),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572-6238)에 비치)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 - 64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준공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10월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현동 신현주공재건축아파트 건립공사
2. 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4번지 외3필지
3. 사업시행자 : 신현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주옥삼)
4. 준공인가의 내역
 - 가. 대지면적 : 163,872.70 m²
 - 나. 연 면 적 : 565,393.811m²
 - 다.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라.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마. 세 대 수 : 3,331세대
 - 바. 층 수 : 지하2층 / 지상22~33층 / 36개동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7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전부개정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써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

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2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제3

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 치 법 규 정 비 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 요 내 용	○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른 전부개정 “붙임 전부 개정 내용 참조”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해 당 없 음”
관계 법령 발취	“해 당 없 음”
관련 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 사항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 인천광역시 세정과-25890(2009.10.1)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5(2009.9.30) 관련 ※ 표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임원임면에 관한 변경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사장 뿐 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 제8조의2)
-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구청장과 이사장간 각각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기능을 강화함.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 임원임기(3년)만료 후 업무성과에 따라 연·해임이 가능하도록

1년 단위 연임으로 개선

(안 제10조제1항)

○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도록 함.

(안 제14조제3항)

○ 비상임이사에게 회의참석수당, 여비등 실비이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6, 팩스 560-405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한다.

-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⑤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제목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 ① (생략)		제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		② -----		-----임원추천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u>이사장추천</u>				<u>위원회</u> -----
<u>위원회</u> 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				-----.
한다.		③ <u>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u>		<u>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u>
③ <u>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u>		<u>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u>		<u>와 관련한 국장과 세무 및 회계 전</u>
<u>사장이 임면하고, 감사는 구청장이</u>		<u>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u>		<u>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u>
<u>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u>		<u>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u>		
<u>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④ <u>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u>		<u>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u>
	<신설>	<u>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u>		<u>다.</u>
	<신설>	⑤ <u>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u>		<u>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u>
		<u>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u>		<u>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u>
		<u>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u>		<u>니한다.</u>

<p><신설></p>	<p>⑥ <u>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신설></p>	<p>제8조2(임원추천위원회)① <u>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u></p>
<p><신설></p>	<p>② <u>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의한다.</u></p>
<p><신설></p>	<p>③ <u>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u></p>
<p>제10조(임기 및 직무)① <u>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u></p>	<p>①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② ~ ③ (생략)</p> <p><신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u></p>

<p>제14조(이사회) ① ~ ② (생략)</p> <p>③ <u>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무국장이 그 의장이 된다.</u></p>	<p>제14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④ <u>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u></p>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⑤ (생략)</p>	<p>⑦ (현행과 같음)</p>
<p><u>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u></p>	<p><삭제></p>
<p><u>제19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설치)~ 제25조(사무협조)(생략)</u></p>	<p><삭제></p>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 2009 - 11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용기·포장류제조업소 영업시설물이 멸실되어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업소 소재지	청문사유 (위반사항)	예정된 행정처분
용기·포장류 제조업	제46호	한양실업	권영국	인천 서구 금곡동 266번지	영업시설물의 전부 철거 (시설물 멸실)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09.10.20 ~ 2009.11.03 (15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청문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절차를 종료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32-560-4330)

2009. 10. 2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2009 - 1184호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환부 공고

주택조합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합주택 등에 대한 환부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환부내역

조합명	석남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	가좌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한동훈	최은영
환부세목/세액	취득세 : 192,317,670원 농특세 : 17,629,100원	취득세 : 456,929,020원 농특세 : 41,885,140원
환부일자	2008.4.8	2008.4.8
환부사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 분양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6두9320, 15929, 2008.2.14선고)에 의거 취득세 부과취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취득세팀 (☎560-42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86호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06호(2008.6.16)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가좌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소유자에게 등기 송달하여 손실보상 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협의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보상협의대상 물건 내역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지분)	주소 (등기부상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319-3	전	15	15	성운기 (1/1)	인천시 북구 가좌동 322	
인천시 서구 가좌동	319-4	전	4	4	성운기 (1/1)	인천시 북구 가좌동 322	
인천시 서구 가좌동	319-17	전	1	1	성운기 (1/1)	인천시 북구 가좌동 322	
인천시 서구 가좌동	319-18	전	2	2	성운기 (1/1)	인천시 북구 가좌동 322	
인천시 서구 가좌동	319-19	도로	32	32	성운기 (1/1)	인천시 북구 가좌동 322	
인천시 서구 가좌동	319-20	전	16	16	성운기 (1/1)	인천시 북구 가좌동 322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협의 계약 전까지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이 있기 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가능

- 지장물 등 : 해당사항 없음

2. 보상협의 및 계약기간 : 2009.10.21 ~ 2009.11.19(30일)

3. 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244)

서구청 본관4층(녹지경관과 공원팀) ☎ 032-560-4805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 산정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토지소유자 추천 가능, 단 해당 요건 충족 시)
- 보상 방법 : 본인과의 대면 협의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계좌입금

5. 보상협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 단 세입자 및 물건 등 보상자는 1부(일반용)
(토지주는 부동산매도용 1부(매수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용 1부)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임야)대장 각 필지별 1부(토지 소유자 해당)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 포함)
- 지참물 :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분증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90호

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국토해양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제7차)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재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2. 사업자성명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수용재결 대상 토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1-227 외 10필지
4. 수용재결 대상 물건 : 해당사항 없음
5. 열람기간 : 2009. 10. 20 ~ 2009. 11. 5
6. 열람 및 의견서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902~4)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 032-560-5902~4)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0 9. 10.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연번	소재지	모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주소	권리종류	주소	성명
1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124.37/1903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34-26	김종인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2	인천 서구 백석동	152	91	152	156	답	답	1,378	335	1	인천 서구 가좌동 277-7 (송달: 인천시 중구 향동 7가 58-54 패럴리미트)	김중희	가압류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송근영	
3	인천 서구 백석동	51	172	51	230	잡	잡	662	364	661.16/2610	인천 서구 석남동 577-12	박경희				
4	인천 서구 백석동	51	218	51	231	잡	잡	661	345	661.16/2610	인천 서구 석남동 577-12	박경희				
5	인천 서구 백석동	51	219	51	232	잡	잡	1,287	655	661.16/2610	인천 서구 석남동 577-12	박경희				
6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373.12/1903	인천 남구 송의동 301-68	변중성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7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124.37/1903	인천 남구 송의동 184-15	서공별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8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348.25/1903	인천 서구 당하동 851	양학래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9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248.75/1903	인천 서구 심곡동 302 한국아파트 202동 1313호	윤동석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10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124.37/1903	인천 부평구 부개동 16-95	이봉수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11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124.37/1903	인천 남구 용현동 343-19	이상현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12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53.35/1903	인천 남동구 구월동 260-5 동아아파트 2동 904호 (송달: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56-4 (19/7)-203)	이시승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13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53.35/1903	인천 남동구 구월동 260-5 동아아파트 2동 904호 (송달: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99-5 (6/3)-301)	이시영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14	인천 서구 백석동	212	46	212	164	제	제	3,036	602	1	인천 계약구 효성동 200-1 현대@ 404-2402 (송달: 인천 중구 향동7가 27-107 비취맨션라 아파트아파트 3단지 5동 406호)	이정훈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광명시 철산동 250 인천 남구 주안동 80 현대아파트 2-903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4-1	동창상호저축은행 (주) 서성관 송민수	
15	인천 서구 백석동	212	98	212	165	제	제	1,648	144	1	인천 계약구 효성동 200-1 현대@ 404-2402 (송달: 인천 중구 향동7가 27-107 비취맨션라 아파트아파트 3단지 5동 406호)	이정훈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광명시 철산동 250 인천 남구 주안동 80 현대아파트 2-903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4-1	동창상호저축은행 (주) 서성관 송민수	
16	인천 서구 백석동	212	98	212	166	제	제	1,648	107	1	인천 계약구 효성동 200-1 현대@ 404-2402 (송달: 인천 중구 향동7가 27-107 비취맨션라 아파트아파트 3단지 5동 406호)	이정훈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광명시 철산동 250 인천 남구 주안동 80 현대아파트 2-903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4-1	동창상호저축은행 (주) 서성관 송민수	
17	인천 서구 백석동	152	102	152	157	답	답	1,033	492	344.335/1033	인천 남구 도화동 601-1 동아아파트 3동 1501호	장신규				
18	인천 서구 백석동	51	172	51	230	잡	잡	662	364	661.16/2610	인천 서구 가정동 284-337 개나리아파트 7동 502호	전제섭				
19	인천 서구 백석동	51	218	51	231	잡	잡	661	345	661.16/2610	인천 서구 가정동 284-337 개나리아파트 7동 502호	전제섭				
20	인천 서구 백석동	51	219	51	232	잡	잡	1,287	655	661.16/2610	인천 서구 가정동 284-337 개나리아파트 7동 502호	전제섭				
21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79.96/1903	인천 남동구 구월동 260-5 동아아파트 2동 904호 (송달: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99-5 (6/3))	조순복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22	인천 서구 백석동	152	90	152	155	답	답	443	186	1	인천 남동구 구월동 260-5 동아아파트 2동 904호 (송달: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99-5 (6/3))	조순복	가압류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송근영	
23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124.37/1903	인천 서구 가정동 174-6 (송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125 (27/8) 동아아파트 16-105)	주영대	가압류 근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 수용재결대상 토지 및 소유자, 관계인 현황(굴포천방수로, 제7차)

2009.10.26()

연 번	소 재 지	모지번		편입지번		지 목		면 적(㎡)		지분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부	현황	공 부	편 입		소유자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 명	
24	인천 서구 백석동	51	93	51	227	잡	잡	1,603	865	124.37/1903	인천 서구 가좌동 산 174	최상훈	가압류 근지당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송근영 광주지구축합	
25	인천 서구 백석동	152	102	152	157	답	답	1,033	492	688.665/1033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5 연수1차 우성@ 115동 702호 (송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4 (19/4) 송도해모로APT 107-801)	하태원				
26	인천 서구 백석동	152	123	152	158	답	답	344	201	1	인천 부평구 부평동 640-8 (송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7-11 (17/7) 명성빌라 -201)	한석창	가압류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4	송근영	
27	인천 서구 백석동	51	172	51	230	잡	잡	662	364	1287.68/2610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19	황인회				
28	인천 서구 백석동	51	218	51	231	잡	잡	661	345	1287.68/2610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19	황인회				
29	인천 서구 백석동	51	219	51	232	잡	잡	1,287	655	1287.68/2610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19	황인회				
								11	4,296				1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94호

폐기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폐 기 사 유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인증기 불용처리
2. 폐기 년월일 : 2009. 10.
3. 폐기공인명 및 인영 : “붙임참조”

폐기공인 인영

신조 공인명	규격(cm)	신조 공인인명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 재무과 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²		업무이관
가좌4동장인/민원전용 (인증기)	2.0cm×2.0cm ²		인증기 사용불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4동민원전용 (인증기)	2.3cm×2.3cm ²		인증기 사용불가
가좌2동장인/민원전용	2.0cm×2.0cm ²		공인 훼손
검단2동장인/민원전용	2.0cm×2.0cm ²		인증기 불용처분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2동민원전용	2.3cm×2.3cm ²		인증기 불용처분

폐기공인 인영

신조 공인명	규격(cm)	신조 공인인명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 문화체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² x1.8cm ²		조직개편
인천광역시서구 문화체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² x1.8cm ²		조직개편
인천광역시서구 문화체육과 분임경리관인	2.0cm ² x2.0cm ²		조직개편
인천광역시서구 문화체육과 분임징수관인	2.0cm ² x2.0cm ²		조직개편
인천광역시서구 문화체육과 물품운용관인	2.0cm ² x2.0cm ²		조직개편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9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09.10.23~11.06(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검암신명2차, 검암신명4차, 검암풍림2차, 검암풍림3차, 경서가이아, 경서태평, 당하금강, 당하대우, 당하풍림1차, 당하풍림2차, 당하풍림3차, 마전대원1차, 마전대원2차, 마전대주, 마전풍림3차, 불로대림, 왕길검단풍림, 왕길신명, 원당금호, 원당대림, 원당동문, 원당신안, 원당엘지, 원당풍림아파트 게시판
4. 공고대상 : 2009.05.01~31. 접수자 중 최초분양계약자(매도자) 단독신청 “붙임참조” (26명)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계약서상 매수자 본인 신분증·통장·도장, 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032-560-4757,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연번	건물명칭	동	호	납부자	비고
1	검암신명2차	205	702	김완식	
2	검암신명4차	402	1004	백승운	
3	검암풍림2차	203	201	이주미	
4	당하금강	107	1403	이지연	
5	당하금강	109	502	김주용	
6	당하금강	110	203	임은정	
7	당하금강	112	1502	손순자	
8	당하대우	103	901	최지숙	
9	당하대우	108	201	최진숙	
10	당하풍림1차	105	1903	박성혜	
11	당하풍림3차	302	1202	강정현	
12	당하풍림3차	304	803	김수경	
13	당하풍림3차	306	604	김충수	
14	마전대원1차	104	1802	유영찬	
15	마전대원1차	105	503	김관식	
16	마전대주	102	1103	조종길	
17	불로대림	106	701	류경숙	
18	왕길검단풍림	102	1001	정민자	
19	원당금호	102	204	신혜자	
20	원당동문	104	904	김현동	
21	원당동문	104	1404	박래복	
22	원당신안	112	202	박영숙	
23	원당풍림	104	201	김창식	
24	원당풍림	107	104	전경화	
25	원당풍림	109	1104	김경미	
26	원당풍림	207	1201	김경미	

[별지 제8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NO.)

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과세물건			
조 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조정신청
사 유

※ 신청인이 환급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할 것)

조정신청 대상자 및 증빙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중
② **부담금 계약사실** 또는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영수증 원본,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이 가능한 자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 접수증

(NO.)

조 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과세물건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벌칙)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97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0조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2009. 10.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09년 7월 1일 기준 및 정정(2004~2009년)
 - 7.1일기준 필지수 : 818필지
 - 정 정 필지수 : 3필지
 - ※ 결정내역 : 토지지번별 m²당 가격(개별통보)
 - ※ 필지별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 이의신청 안내

- 신 청 기 간 : 2009. 11. 1 ~ 11. 30(30일간)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결정·공고한 200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우리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방법
 - 구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후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
- 이의신청처리 : 2009. 12. 1 ~ 12. 30(30일간)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출산 장려 및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입양 축하금 중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을 확대(셋째이후→둘째이후)하고, 출산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 출산 분위기를 장려코자 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및 출산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안 제2조, 안 제3조)

▷ 현행 : 셋째이후 출산, 100만원 지원

▷ 개정 : 둘째이후 출산, 예산범위 안에서 출산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 둘째자녀 100만원 이내

- 셋째자녀 300만원 이내

-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이내

○ 출산 축하금 지급시기 변경(안제3조, 안제7조)

▷ 현행 : 일시금 지급

▷ 개정 : 2년에 걸쳐 2회 분할 지급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 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4) 및 FAX(560-4327)로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를 “활성화를 위하여 영유아를 입양한 부모 및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2. “둘째 이후 자녀출산” 이라 함은 한 가정에 출산한 둘째부터의 신생아를 말한다.

4. “둘째 이후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이하 “축하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영유아 입양과 둘째 이후(둘째를 포함한다)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대해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②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자녀 100만원 이내, 셋째자녀 300만원 이내,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2년에 걸쳐 2회 분할지원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입양아인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출생아·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전 부터 계속하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출생의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한 때에는 서구 관내에 출생아와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와 **가족관계등록관서로부터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축하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지원대상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의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지원대상자(또는 수령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제2항 중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그 다음달 5일까지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달 5일까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를 “출산·입양 축하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시기·지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을 “첨부
서류 : 지원대상자(또는 수령인)예금통장 사본 1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조례에 따른 출산·입양 축하금의
지원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9 - 1202호

지적공부 시행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1014호, 2009. 8. 7. 공포)에 의거 2009.10.23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지구내 (당하동↔원당동)의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 하였기에 지적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공고 합니다.

2009. 10.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10. 23 - 2009. 11. 7
2. 지적공부 작성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구, 동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구, 동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지번수	면 적(m ²)		지번수	면 적(m ²)	
당하동	61필	60,474m ²	원당동	61필	60,474m ²	지번별 조서 불임
원당동	2필	298m ²	당하동	2필	298m ²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4. 알림사항 :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2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지구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당하동 ↔ 원당동)토지 48필지, 임야 15필지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 적(㎡)	이동일자
	구	동				구	동				
1	서구	당하동	3-2	답	1,086	서구	원당동	737-13	답	1,086	2009-10-23
2	서구	당하동	3-3	임	34	서구	원당동	737-14	임	34	"
3	서구	당하동	4-1	답	22	서구	원당동	737-15	답	22	"
4	서구	당하동	5-8	전	1,071	서구	원당동	737-16	전	1,071	"
5	서구	당하동	6-2	답	126	서구	원당동	737-17	답	126	"
6	서구	당하동	7-1	전	1,045	서구	원당동	737-18	전	1,045	"
7	서구	당하동	7-3	전	1,561	서구	원당동	737-19	전	1,561	"
8	서구	당하동	8	대	628	서구	원당동	737-20	대	628	"
9	서구	당하동	8-2	도	215	서구	원당동	737-21	도	215	"
10	서구	당하동	8-3	전	17,896	서구	원당동	737-22	전	17,896	"
11	서구	당하동	9-1	전	1,014	서구	원당동	737-23	전	1,014	"
12	서구	당하동	10-3	장	1	서구	원당동	737-24	장	1	"
13	서구	당하동	10-4	장	1	서구	원당동	737-25	장	1	"
14	서구	당하동	13-7	장	21	서구	원당동	737-26	장	21	"
15	서구	당하동	13-8	장	12	서구	원당동	737-27	장	12	"
16	서구	당하동	14-3	전	317	서구	원당동	737-28	전	317	"
17	서구	당하동	22-4	답	2	서구	원당동	726-1	답	2	"
18	서구	당하동	22-32	답	65	서구	원당동	726-2	답	65	"
19	서구	당하동	22-33	답	546	서구	원당동	726-3	답	546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지구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당하동 ↔ 원당동)토지 48필지, 임야 15필지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 적(㎡)	이동일자
	구	동				구	동				
20	서구	당하동	22-34	구	506	서구	원당동	726-4	구	506	"
21	서구	당하동	22-35	전	437	서구	원당동	726-5	전	437	"
22	서구	당하동	22-36	답	279	서구	원당동	726-6	답	279	"
23	서구	당하동	22-37	답	12	서구	원당동	726-7	답	12	"
24	서구	당하동	22-38	답	179	서구	원당동	726-8	답	179	"
25	서구	당하동	22-39	답	78	서구	원당동	726-9	답	78	"
26	서구	당하동	22-40	답	190	서구	원당동	726-10	답	190	"
27	서구	당하동	22-41	답	73	서구	원당동	726-11	답	73	"
28	서구	당하동	23-1	전	992	서구	원당동	726-12	전	992	"
29	서구	당하동	23-3	전	446	서구	원당동	726-13	전	446	"
30	서구	당하동	24-1	답	420	서구	원당동	726-14	답	420	"
31	서구	당하동	26-6	답	37	서구	원당동	726-15	답	37	"
32	서구	당하동	26-7	답	55	서구	원당동	726-16	답	55	"
33	서구	당하동	27-1	답	243	서구	원당동	726-17	답	243	"
34	서구	당하동	31-1	답	701	서구	원당동	726-18	답	701	"
35	서구	당하동	32-4	답	1,154	서구	원당동	726-19	답	1,154	"
36	서구	당하동	32-5	유	411	서구	원당동	726-20	유	411	"
37	서구	당하동	32-6	답	897	서구	원당동	726-21	답	897	"
38	서구	당하동	35-1	답	41	서구	원당동	726-22	답	41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지구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당하동 ↔ 원당동)토지 48필지, 임야 15필지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 적(㎡)	이동일자
	구	동				구	동				
39	서구	당하동	36	대	330	서구	원당동	726-23	대	330	"
40	서구	당하동	36-6	대	29	서구	원당동	726-24	대	29	"
41	서구	당하동	36-7	대	205	서구	원당동	726-25	대	205	"
42	서구	당하동	36-8	대	13	서구	원당동	726-26	대	13	"
43	서구	당하동	981-5	구	302	서구	원당동	726-27	구	302	"
44	서구	당하동	981-6	구	542	서구	원당동	559-17	구	542	"
45	서구	당하동	982-1	도	301	서구	원당동	726-28	도	301	"
46	서구	당하동	983	도	53	서구	원당동	599-18	도	53	"
47	서구	당하동	산109-2	임	3,748	서구	원당동	산128-1	임	3,748	"
48	서구	당하동	산110-2	임	331	서구	원당동	산128-2	임	331	"
49	서구	당하동	산110-5	임	821	서구	원당동	산128-3	임	821	"
50	서구	당하동	산110-6	임	1,209	서구	원당동	산128-4	임	1,209	"
51	서구	당하동	산110-7	임	133	서구	원당동	산128-5	임	133	"
52	서구	당하동	산111-4	임	46	서구	원당동	산128-6	임	46	"
53	서구	당하동	산111-5	임	396	서구	원당동	산128-7	임	396	"
54	서구	당하동	산112	임	3,145	서구	원당동	산128-8	임	3,145	"
55	서구	당하동	산112-2	임	1,501	서구	원당동	산128-9	임	1,501	"
56	서구	당하동	산112-3	임	4,645	서구	원당동	산128-10	임	4,645	"
57	서구	당하동	산112-7	임	818	서구	원당동	산128-11	임	818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지구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당하동 ↔ 원당동)토지 48필지, 임야 15필지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 적(㎡)	이동일자
	구	동				구	동				
58	서구	당하동	산112-8	임	1,334	서구	원당동	산128-12	임	1,334	"
59	서구	당하동	산112-9	임	760	서구	원당동	산128-13	임	760	"
60	서구	당하동	산113-4	임	5,836	서구	원당동	산128-14	임	5,836	"
61	서구	당하동	산116-2	임	1,162	서구	원당동	산128-15	임	1,162	"
62	서구	원당동	562-1	답	89	서구	당하동	981-7	답	89	"
63	서구	원당동	778-17	구	209	서구	당하동	981-8	구	209	"
계			63필지		60,772			63필지		60,77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203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약칭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상한선 50억원을 개정하여 출연금을 50억원 이상 조성하고 필요시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토록 함
- 용자은행의 확대에 용자에 관한 협약대상을 구금고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현실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자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 경제여건을 고려한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용자대상자 선정 절차 간소화
- 용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중 사후관리 기간만 규칙으로 분리되어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로 옮김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약칭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 신설 (제1조, 제2조, 제2조의1)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제5조의1, 제5조의2, 제5조의3)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상한선 50억원을 개정하여 출연금을 50억원 이상 조성하고 필요시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토록 함 (제3조제2항)
- 용자은행의 확대에 용자에 관한 협약대상을 구금고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현실성 제고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
- 용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제6조)
- 용자대상자 선정절차 간소화 (제9조)
- 사후관리 기간 신설(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1. 16.(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42) 또는 Fax(566-98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으로 하고,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로 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융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제2항 중 “5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회계년도마다”를 “50억원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시마다”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구금고”를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1부터 제5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구의회 의원 1명 이내
 2. 구 금고 서구청지점장
 3. 신용보증기금 인천서지점장
 4. 그 밖에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인사 중 위원장 추천하는 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수립 및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융자시기에 맞추어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3(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외 부분 중 “공장등록 또는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필한 중소기업체로서”를 “중소기업으로 하며”로 하고, “업체로 한다.”를 “업체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용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전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금고와 협의하여”를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구금고는”를 “금융기관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구청장과 금융기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를 “용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금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금의 설치)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u>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② (생략)</p> <p><신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u>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금의 설치)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u>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1(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p> <p>2. "금융기관"이라 함은 융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p>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생략)</p> <p>③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규모는 구청장과 <u>구 금고</u>의 협약에 의한다.</p> <p><신설></p>	<p>②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시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p>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규모는 구청장과 <u>금융기관</u>의 협약에 의한다.</p> <p>제5조의1(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구의회 의원 1명 이내 2. 구 금고 서구청지점장 3. 신용보증기금 인천서지점장 4. 그 밖에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인사 중 위원장 추천하는 자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 질 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 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 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 무 담당으로 한다</p> <p>제5조의2(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 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 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획 수립 및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 금운용계획 수립 및 용자시기에 맞추어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6조(용자대상업체) 기금의 용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u>공장등록 또는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필한 중소기업체로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p> <p>1. ~ 9. (생략)</p> <p>제9조(용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자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u>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 구급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③ <u>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u></p> <p>제5조의3(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용자대상업체) 기금의 용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u>중소기업으로하며</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업체에 대하여</u> 우대지원 할 수 있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제9조(용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자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u>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용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0조(용자조건) ① 자금의 용자는 <u>운전자금</u>, 유망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한다.</p> <p>②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에서 기금사정에 따라 <u>구금고와 협의하여</u> 매년 정한다.</p> <p>③~⑦ (생략)</p> <p>제11조(추가용자) <u>구금고는</u>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다.</p> <p>제14조(사후관리) <u>구청장과 금융기관에</u>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용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0조(용자조건) ① 자금의 용자는 <u>운영자금</u>, 유망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한다.</p> <p>②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에서 기금사정에 따라 <u>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u> 매년 정한다.</p> <p>③~⑦ (생략)</p> <p>제11조(추가용자) <u>금융기관은</u>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다.</p> <p>제14조(사후관리) ① <u>용자금 지원업체에</u>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u>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용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용자금 지원업체의 사후 관리 기간은 용자금의 대출기간으로 한다.</u></p>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1204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규칙의 용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8개조) 삭제로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여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8개조)
- 용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시 “용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만 남게 됨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삭제한 연혁이 남아 규칙의 형태가 보기에 좋지 않음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여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1.16.(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42) 또는 Fax(566-98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자의 범위) ① 업체별 용자한도 및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② 용자수혜업체는 용자금의 전액 상환시까지 재용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실적서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회사 가동 상황 등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선정업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선정취소) 선정된 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3.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며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